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어르신·장애인 단체와 투표소 현지 점검

광주북구선관위, 대한노인회·장애인단체 등 7개 기관·단체

휠체어·시각장애인 등 불편없는지 중점 확인·보완 개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어르신·장애인들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소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10일 오후 관내 136개 (사전)투표소 중 1층외 투표소 등 투표 편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12개 투표소에 대하여 지난 12월 양해각서의 협약에 따라 노인회·장애인 단체 등 7개 단체 등에서 추천한 대표자와 공동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어르신·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맞춤형 모의투표 체험실시, (사전)투표일에 이날 현지 점검에서는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광주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대한노인회북구지회,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북구지부, 북구장애인복지지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휠체어로 이동하는 선거인, 시각장애인 등이 불편없이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미흡한 시설은 향후 보완 개선하도록 하였다.

선관위는 앞으로 어르신·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맞춤형 모의투표 체험실시, (사전)투표일에



교통약자이동 장애인 차량 지원 및 투표안내요원을 배치 등 투표 취약계

층의 투표참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압해읍 “일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노인사회활동 발대식 개최

신안군 압해읍(읍장 박운기)은 9일 압해읍 회의실에서 132명의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발대식을 시작으로 압해읍 노인사회활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표가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를 참

여자 모두가 외치는 퍼포먼스로 지역 사회발전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 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노노케어, △근린생활시설관리, △공중목욕장 도우미,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도우미, △보건소안전지킴이,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복지시설 도우미 등 사업유형별로 전반적인 사업 설명 및 활동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박운기 압해읍장은 “일하는 기쁨! 활기찬 노후!라는 슬로건처럼 나이드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세상과 소통하는 자폐미술영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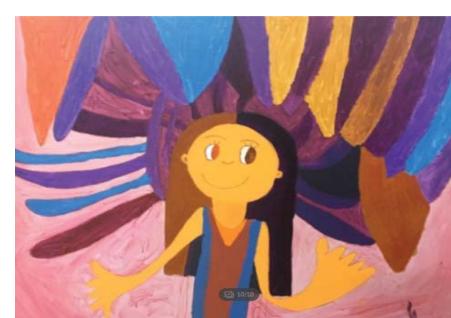
사람들은 ‘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는 19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포제에서 열리는 전시 ‘열린행성그라운드 2019’를 보면 그 선입견은 사라지고 오히려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

‘열린행성그라운드 2019’에는 10명의 자폐미술영재가 그린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넘친다.

2011년부터 빨달장애예술가를 성장시켜왔으며 이번 전시를 기획한 시스플래닛은 “사회에서는 ‘장애’라 부르는 우리 작가들의 특성이 예술 안에서만큼은 대체될 수 없는 ‘재능’이 된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 이번 10명의 빨달장애아티스트들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젬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정상과 비정상의 논리보다 놀라움과 신기함, 확장된 존재와 에너지의 가능성에 우리의 편견과 잡재



김기혁 Girl Boy, acrylic on canvas, 2019.



김정우, sofa, colored-pencil & acrylic on canvas, 2019

성을 열어가는 것”이라며 “그 열림의 울림에서 자유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법상 성년후견제 장애인 결정권 침해 안해”

성년후견을 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에게도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법률행위를 돋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민법상 기준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A씨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등을 규정한 민법 9조1항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을 상대로 본인 아닌 다른 사람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하며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청구권을 본인에게만 부여하면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이나 타인에 의한 의사 왜곡으로 실질적 권리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민법과 가사소송법엔 혹시라도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이익에 반해 성년후견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받게 한 것도 “후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시에 후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달성되는 ‘본인 보호’란 법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선아·문형배 재판관은 “개관적 관점에서 보기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도 자기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성년후견개시 요건 및 절차는 제도적 목적에 비춰 필연의 법위에서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